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01. 9. 1.	전문개정	2004. 9. 1.
개정	2007.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6.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부설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주업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조직, 입주자 선정과 지원관리, 졸업 및 퇴거, 사업평가, 재무회계 등의 운영과 관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 창업을 위하여 센터가 관장하는 공간시설을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제작"이라 함은 사업화를 위하여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만료 또는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하여 센터에서 관장하는 공간시설을 점용하지 아니하고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라 함은 입주계약사항 위반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6. "성공부담금"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립경영기반을 갖게 되는 경우 본 대학에 기부 또는 납부하는 주식 및 금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 선정, 지원, 관리 및 졸업,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 및 기술정보, 기술개발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기술개발 자문에 관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과 입주자간 상호 연구 인력의 교류
5. 입주자 지원 시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해산 후의 재산귀속) 센터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경영지원팀, 기술개발지원팀, 행정지원부,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안 종료 시 해산한다.

제7조(센터장 및 매니저) ① 센터장은 본 대학 취창업지원처장이 겸직하거나 또는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하여 정기적 그리고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보육매니저는 총장 또는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경영지원팀 등) ① 센터 내에 경영지원팀과 기술개발지원팀,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경영지원팀은 센터 입주자의 경영관리지원을 위하여 본교 교원 중 5인 이내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③ 기술개발지원팀은 입주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일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④ 행정지원부에는 행정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위원)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전임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위원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센터 주요사업의 계획과 결과
 3. 입주자 선정심의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입주자 선정, 지원 및 관리

제11조(입주자격) ①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디자인, 첨단 산업 및 정보통신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1. 본 법인정관 제 65조에 해당하는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판정하는 자

제12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센터에서 정한 별도 양식의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신청 마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가 정하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은 입주신청서 접수 마감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주 예정자는 지정된 입주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제14조(입주승인취소)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입주를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정 받은 경우, 단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입주시기 연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일 내에 입주가 어려울 때에는 입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센터에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일을 배정 받아야 한다. 단, 새로운 입주일은 최초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기간 연기)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입주기간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② 입주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가 정한 별도양식으로 입주기간 연장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입주기간 연장희망원을 접수하고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만료일 15일전까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입주부담금) ① 입주자는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입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성공부담금) 졸업자 또는 퇴거자는 성공부담금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을 센터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운영규칙준수)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숙식제한, 물품의 반출입, 방재관리, 출입관리, 청소, 위생 및 주차 등에 관한 센터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시정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지원) ①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본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설비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 5 장 졸업 및 퇴거

제21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와 졸업 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졸업자의 관련 자료는 졸업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입주자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입주자의 사업활동이 본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6. 사전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입주실을 비울 경우
 7.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퇴거통보를 받은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재심결과를 해당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입주자가 퇴거예정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입주자가 퇴거명령을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입주자 동의 없이 입주자 소유의 시설, 비품 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한다.
- ⑥ 퇴거자 관련 자료는 퇴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3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및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와 기타 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 6 장 사업 평가

제24조(평가)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매 6개월 단위로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5조(지원 및 징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입주자에 각종 창업기금 알선, 임대료 감면, 입주기간 영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는 이행촉구, 지정요구,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42조에 의한 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이행촉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입주자는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입주자는 퇴거조치 할 수 있다.

제26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센터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변경
3.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제 7 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년도) 센터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수입) 센터의 수입은 입주자 임대료, 정부 및 각종 단체 지원금, 입주자 성공부담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예산 집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성과급

제30조(성과급 지급) 센터장 및 매니저의 업무실적과 성과를 평정하여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